

창업세무정보

Busan Economic Promotion Agency

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경제 중흥시대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Busan Economic Promotion Agency

INDEX

사업자등록	• 신청 및 미 등록시 불이익 • 사업자 유형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개념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 계산구조 • 간편장부대상자 • 인적공제 • 산출세액
지출증빙	• 정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기타사항	•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 두루누리사회보험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사업자등록



- 신청 및 미 등록시 불이익
- 구비서류
- 정정 및 휴 · 폐업
- 사업자 유형



신청 및 미등록시 제제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

-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② 사업장 마다
-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 ④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 신청

■ 미등록시 제제

- ①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②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 ③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능
- ④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조세범처벌법)



신청 및 미등록시 제제

■ 구비서류

-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② 사업허가증 사본 1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함)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⑤ 동업계약서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신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위하여, 신청서에 본인인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기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	------	---------------

1. 인적사항

상 호(단 체 명)	영○○	전 화 번 호	(사 업 장)
성 명(대 표 자)	홍 ○ ○ 김 ○ ○		(자 택)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 xxxxxx-xxxxxx	F A X 번 호	(휴대전화) 010-xxx-xxxx
사업장(단 체)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2. 사업장 현황

업 종	주업태	건설업	주종목	주택건축판매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451102	2015. 07. 08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	----------	--	--

사업장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명세		
			성 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 세
	214.2㎡	㎡				~	원	원

허 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허가	[] 등록 [] 해당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여 [] 부
----------------	------------------	--------------------	------	------	---------------------

개별소비세 해 당 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통
-----------------	--------	--------	--------	--------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300,000,000원	타인자금	원
-----------------------	------	--------------	------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	-------	-------	------------------	-------	-------

전자 세금 계산서 (e세로)	회원가입 신청 여부	[] 여 [] 부	사용자아이디(ID)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6~20자) * 온라인 신청 회원과 ID 중복방지를 위해 기재 하신 ID에 영문만 첨부되어 등록됩니다. qt[xxxxx] : 세무서 신청, qh[xxxxx] : 홈택스 신 청	
	전용메일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e세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전용메일 이용 동의 여부 선택 이 가능하며 동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 아래 전자우편주소로 초기 비밀번호가 발송되니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 한정함)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0태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영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
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징합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조세
법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3) 영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영세의 금융회사 등 등
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영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징합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조세법 처벌법」 제
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
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실용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앞선·중개
한 경우에는 「조세법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금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영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환금융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 홍준식 김영철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장번호	XXXXXXXX-XXXXXXX	010-XXXX-XXXX	세무대리인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
자 [] 그 밖의 단체 []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2015 년 7 월 8 일
신청인: 홍○○ 김○○ (서명)
위 대리인: 장병호 (서명)

금정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표준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일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일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금주금 도·스매일 및 파세유출장소에서의 영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불이익의 처치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출입허용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 ③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 ④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공 동 사 업 약 정 서

동업자(1)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동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X
성 명: 홍 ○ ○

동업자(2)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동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X
성 명: 김 ○ ○

상기 동업자(1) 홍○○을 이하 “갑”이라 칭하고 동업자(2) 김○○를 이하 “을”이라 칭하여 부산시 금정구 ○○동 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운영 및 쌍방의 권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함.

제 1 조 [공동사업의 업종 및 장소]

상호(업종): 영○○(주택신축판매업)

장소: 부산시 금정구 ○○동

제 2 조 [사업목적]

주택신축판매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지분]

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지 분	출자내역
홍○○	50/100	자금 출자
김○○	50/100	자금 출자

제 4 조 [이익분배]

(갑), (을)은 위 주택신축판매업의 운영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에 제세공과금과 기타 제반경비를 지출한 나머지 금액에서 제 3 조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분배하

기로 한다.

제 5 조 [권리의무]

본 건의 동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제 3 조의 투자지분율에 따른다.

제 6 조 [운영방법]

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총괄경영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중요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기로 하고 승인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자가 전부 책임지기로 한다.

제 7 조 [기타사항]

본 동업약정에 기재되지 않은 조항은 민법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 (을)간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 (을) 각 1부씩 보관하며 동업 계약을 체결함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2015년 7월 8일로 한다.

2015년 7월 8일

동업자 (갑) 홍 ○ ○ (인)

동업자 (을) 김 ○ ○ (인)

정정 및 휴폐업

■ 사업자등록의 정정

- 상호 변경시
- 사업장을 이전할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지체
없이
정정
신고

■ 휴폐업 신고

- 휴업 : 휴업신고서 제출 (홈택스로 가능)
- 폐업 : 폐업신고서 + 사업자 등록증 제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사업자의 유형



◁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X
- 세금계산서 발급X (계산서, 영수증 발급)
-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용역
토지
인적용역
금융/보험용역 등

사업자의 유형

과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구분	개인	법인
과세근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 - 손금
과세범위	소득원천설(열거주의)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
세율구조	6%~38% 누진세율	10%~22% 누진세율
특징	▪ 설립등기 필요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 가능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 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사업에 적합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하는 세제상의 불이익

사업자의 유형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누구나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거래증빙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영수증 발급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신고절차	예정신고(예정고지), 확정신고	예정부과, 확정신고
배제업종	없음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구분	(부가가치율)
전기,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기타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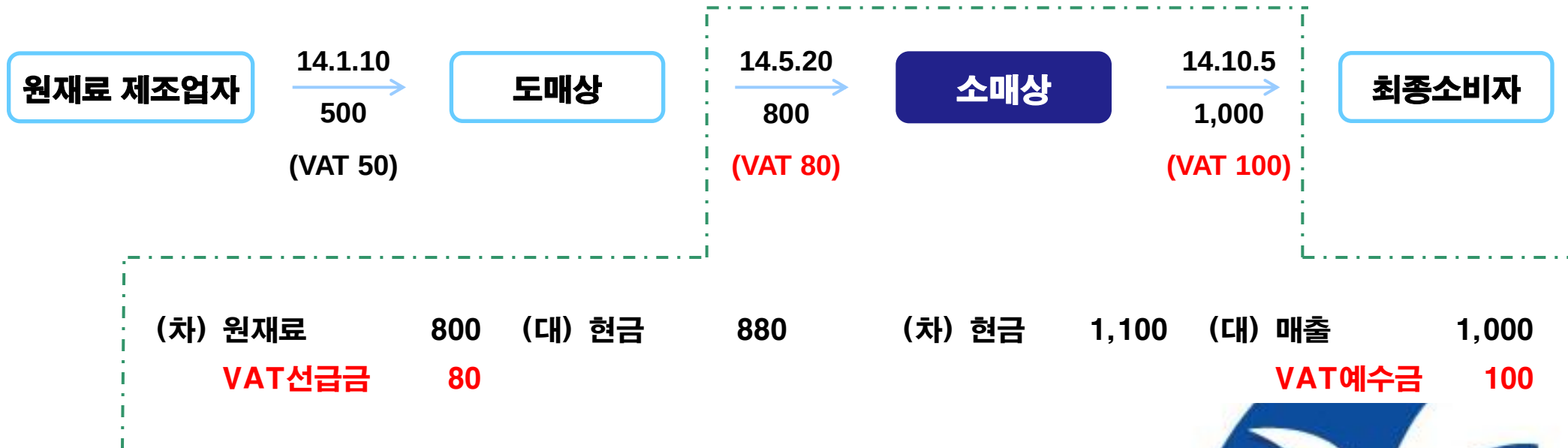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 개념 및 신고납부
- 계산근거
- 과세기간
- 유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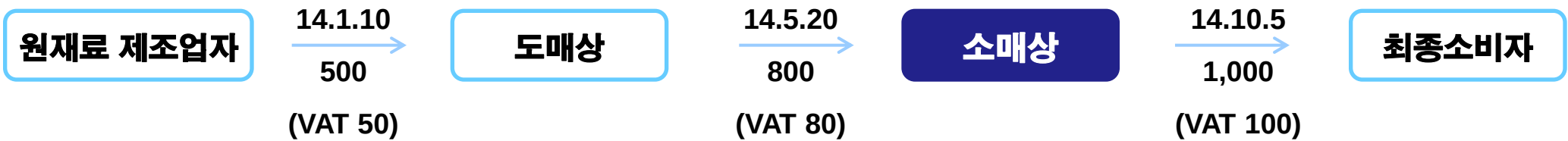


부가가치세 개념

▶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념



소매상의 계산구조

	1기	2기
매출세액	-	100
매입세액	(80)	-
	(80)	100

7.25 신고(30일 내 환급)

1.25 신고.납부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제1기 : 1.1 ~ 6.30	7.25
제2기 : 7.1 ~ 12.31	1.2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1장 앞쪽)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2014년 제 1 기 (1 월 1 일 ~ 6 월 30 일)						
사업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605-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발급분 (1)	10/1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10/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3)	196,141,825	19,614,182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4)	6,065,455	606,545
	영세율	세금계산서발급분 (5)	0/100	
		기타 (6)	0/100	
	예정신고누락분 (7)			
	대손세액가감 (8)			
	합 계 (9)	202,207,280	㉔	20,220,727
매입세액	매입	세금계산서일 반 매 입 (10)	171,304,156	17,130,409
		수 취 분 고 정 자 산 매 입 (11)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 입 자 발 행 세 금 계 산 서 (13)		
		그 밖 의 공 제 매 입 세 액 (14)		
		합 계 (10)+(11)+(12)+(13)+(14) (15)	171,304,156	17,130,409
		공 제 받 지 못 할 매 입 세 액 (16)		
		차 감 계 (1 5) - (1 6) (17)	171,304,156	17,130,409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㉔ - 매 입 세 액 ㉕)			㉕	3,090,318
경감	그 밖 의 경 감 · 공 제 세 액 (18)			
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표등발행공제등 (19)	215,756,000		2,804,828
	합 계 (20)	215,756,000	㉖	2,804,828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㉗	
	예 정 고 지 세 액 (22)		㉘	2,943,000
	사 업 양 수 자 의 대 리 납 부 기 납 부 세 액 (23)		㉙	
	매 입 자 납 부 특 례 기 납 부 세 액 (24)		㉚	
	가 산 세 액 계 (25)		㉛	
	차 감 · 가 감 하 여 납 부 할 세 액 (환 급 받 을 세 액) (㉖ - ㉗ - ㉘ - ㉙ - ㉚ + ㉛) (26)			-2,657,510
총 납 납 부 사 업 자 가 납 부 할 세 액 (환 급 받 을 세 액)				

② 국내환급금계좌신고 (환급세액이2천만원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농협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

③ 폐업신고	폐업일	폐업사유
--------	-----	------

과세표준명세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27) 도소매	운동화 의류	523242	202,207,280	
(28)				
(29)				
(30) 수입금액제외		523242		
(31) 합 계			202,207,280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
 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07월 25일
 (서명 또는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인)
 부장전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뒷쪽 참조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장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051 - 811 - 1460
-----------	-----	-----	---------	------	------------------

210mm×297mm [복합지 80g/㎡ 또는 중량지 80g/㎡]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605-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예정신고 누락분세	(7)매출			
	과세	세금계산서 (32)	10/100	
		기타 (33)	10/100	
	영세율	세금계산서 (34)	0/100	
		기타 (35)	0/100	
(12)이입	합	계 (36)		
		세금계산서 (37)		
		그 밖 의 공 제 매 입 세 액 (38)		
	합	계 (39)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14) 그밖의공제 매입세액 명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	일 반 매 입 (40)		
	명세서 제출분	고 정 자 산 매 입 (41)		
	의 제 매 입 세 액 (42)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뒤쪽참조		
	고 금 의 제 매 입 세 액 (44)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45)			
	재 고 매 입 세 액 (46)			
	변 제 대 손 세 액 (47)			
	외 국 인 관 광 객 에 대 한 환 급 세 액 (48)			
	합 계 (48)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16) 공제받지 못 할 매입세액 명세	공 제 받 지 못 할 매 입 세 액 (49)			
	공 통 매 입 세 액 면 세 사 업 분 (50)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1)			
	합 계 (52)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18) 그밖의 경감·공제 세액명세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3)			
	전 자 세 금 계 산 서 발 급 세 액 공 제 (54)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5)			
	현 금 영 수 증 사 업 자 세 액 공 제 (56)			
	기 타 (57)			
	합 계 (58)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25) 가산세명세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9)		1/100	
	지 연 발 급 등 (60)		1/100	
	지 연 수 취 (61)		1/100	
	지 연 발 급 등 (62)		2/1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전송	지 연 전 송 (63)	0.5(0.1)%	
		미 전 송 (64)	1(0.3)%	
	세금계산서	지 연 전 송 (65)	1/100	
	합계표	제 출 불 성 실 (66)	5/1,000	
		무 신 고 (일 반) (67)	뒤쪽참조	
		무 신 고 (부 당) (68)	뒤쪽참조	
		과 소 · 초 과 환 급 신고(일반) (69)	뒤쪽참조	
		과 소 · 초 과 환 급 신고(부당) (70)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71)		뒤쪽참조	
	영 세 율 과 세 표 준 신 고 불 성 실 (72)		5/1,000	
	현 금 매 출 명 세 서 불 성 실 (73)		1/100	
	부 동 산 임 대 공 급 가 격 명 세 서 불 성 실 (74)		1/100	
	매입자납부특례	거 래 계 좌 미 사 용 (75)	뒤쪽참조	
		거 래 계 좌 지 연 입 금 (76)	뒤쪽참조	
	합 계 (77)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면세사업 수입금액	(78) 도소매	운동화 의류	523242	
	(79)			
	(80) 수입금액제외		523242	
			(81) 합계	

계산서발급 및수취명세	(82) 계산서 발급금액		
	(83) 계산서 수취금액		140,250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구분				금액	세율	세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발급분	(1)		10/1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10/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3)	196,141,825	10/100	19,614,182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4)	6,065,455		606,545	
	영세율	세금계산서발급분	(5)		0/100		
		기타	(6)		0/100		
	예정신고누락분			(7)			
	대손세액가감			(8)			
	합계			(9)	202,207,280	㉑	20,220,727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10)	171,304,156		17,130,409	
		고정자산매입	(11)				
	예정신고누락분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그밖의공제매입세액			(14)			
	합계(10)+(11)+(12)+(13)+(14)			(15)	171,304,156		17,130,409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16)			
	차감계(15)-(16)			(17)	171,304,156	㉒	17,130,409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㉑-매입세액㉒)				㉓		3,090,318	
경감 공제 세액	그밖의경감·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19)	215,756,000		2,804,828
	합계			(20)	215,756,000	㉔	2,804,828
예정신고미환급세액				(21)		㉕	
예정고지세액				(22)		㉖	2,943,000
사업양수자의대리납부기납부세액				(23)		㉗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				(24)		㉘	
가산세액계				(25)		㉙	
차감·가감하여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㉓-㉔-㉕-㉖-㉗-㉘+㉙)					(26)		-2,657,510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 215,756,000원
- 기타(현금매출액)
: 6,672,000원

- 매입 : 188,434,565원

-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세액공제
: 신용카드발급금액 X 1%
- 예정고지세액
: 4.25일 기납부(개인)
- 차감·가감하여납부할세액
: 실제 납부/ 환급 받을 세액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제1기 (1.1 ~ 6.30)	예정신고기간	1.1 ~ 3.31	4.25
	과세기간 최종 3개월	4.1 ~ 6.30	7.25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기간	7.1 ~ 9.30	10.25
	과세기간 최종 3개월	10.1 ~ 12.31	1.25

(2) 간이과세자 : 1.1 ~ 12.31

단, 폐업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

(3) 과세유형변경의 경우

구분	간이과세자 적용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그 변경 이후 7.1 ~ 12.3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그 변경 이전 1.1 ~ 6.30



종합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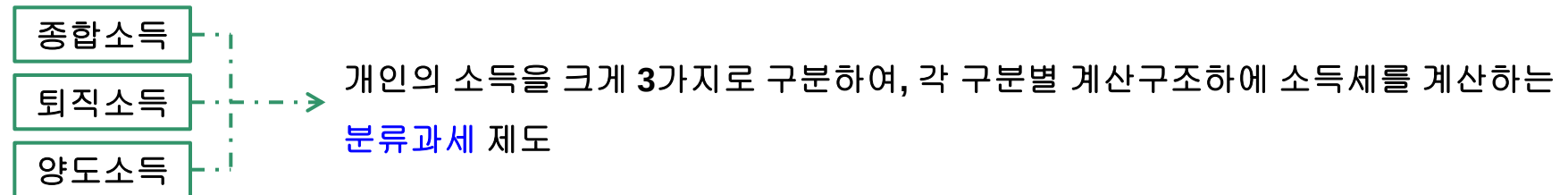


- 개요
- 계산구조
- 간편장부대상자
- 인적공제
-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개요

개인의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

■ 과세대상 소득



■ 신고납부

: 다음년도 5.31 까지 신고납부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에 해당하는 경우 6.30 까지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총 수 입 금 액	총.수	총.수	총.수	총급여	총.수	총.수
	(+)G-up금액					
(-) 필 요 경 비	-	-	필.경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	필.경
종합소득금액	[+ + + + +]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X) 세 율

산 출 세 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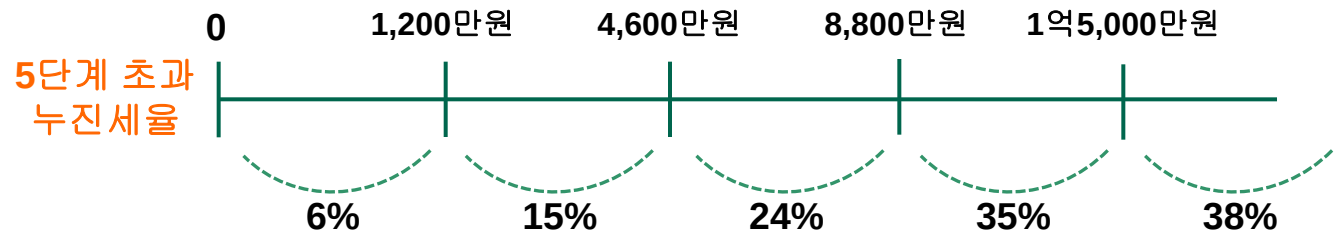
(-) 감 면 공 제 세 액

결 정 세 액

(+) 가 산 세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간편장부대상자

구분	업종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추계에 의한경우		가산세대상자	
		성실신고 의무자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	단순경비율 대상	무기장 가산세	가산세 배제
가	농업,임업,어업,광업	20억	6억	3억	3억 미만	6천만	6천만	업종구분 없이 4.8천만 이상	1. 신규사업자 2. 직전년도 수입금액 (4.8천만미만) 3. 보험모집,사 업소득 연말정 산대상자 (7.5천만이하)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나	제조업,음식숙박업	10억 이상	3억 이상	1억5천 이상	1억5천 미만	3.6천 이상	3.6천 미만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금융,보험업								
다	부동산임대업	5억 이상	1억5천 이상	7.5천 이상	7.5천 미만	2.4천 이상	2.4천 미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014년 귀속 기장 의무 (간편장부대상자 (201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판단))

2014년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

(단위: 원, %)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일반율(기본율)	자가율(초과율)
	940903	13,294,380	29.2	29.2	61.7	46.4
합계		13,294,380				

※ 안내문 내용은 3월말까지 수집한 자료로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이자(×) 배당(×) 사업연말정산(×) 근로(○) 연금(×) 기타(×)

공제 항목

구분	납부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전액
소득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항목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의 12%*
	연금저축계좌	

*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적용률(12%)은 4월 임시국회에서 소급입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항목

구분	가산세 적용 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
추계신고 시	
(세금)계산서관련보고불성실	미(지연)제출 금액: 원
현금영수증미가맹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 건, 10만원 이상: 원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건, 10만원 이상: 원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금액: 원
사업용계좌미신고	

※ 세무서 신고창구가 매우 혼잡하니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실 분은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 안내사항

장소: 남천동 (남천역 1번출구),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인적공제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1. 기본공제 (1명당 연150만원)	본인	-	-	
	배우자	-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60세이상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20세이하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20세이하	100만원 이하
		수급자	-	100만원 이하
		위탁아동	18세 미만	100만원 이하
		공제사유	1명당 공제액	
2.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부녀자	나 자신이 남편있는 여성, 남편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부모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경우		

산출세액

▶ 속산표

과세표준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15% -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24% - 5,220,000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35% - 14,900,000
1억 5,000만원 초과	과세표준 X 38% - 19,400,000



4대보험



- 개요
- 사업장가입신고
-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기관	자격관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보험료징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목적		소득보장(노령,장애)	질병치료, 출산	실업 및 고용안정	산업재해보상
대상		전 국민(근로소득자)	전 국민(근로소득자)	근로자	근로자
자격관리		사업장/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	사업/가입자	사업
보험료 산정 /부과	부과기준	소득	보수	보수	
	보험료율	9%	6.07% (장기요양보험료 6.55%)	· 실업급여 : 1.3%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 ~ 0.85%	사업종류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
	부담기준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 지역가입자 : 개인전액부담	· 직장가입자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 지역가입자 : 개인전액부담	· 실업급여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사업자전액부담	사용자 전액부담
	납부방법	매월 부과	매월 부과한 후 보수 총액신고로 사후정산	매월 부과한 후 보수총액신고로 사후정산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서류		· 사업장적용신고서 ·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서	· 사업장적용신고서 ·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근로자고용신고서
신고기한		해당사유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교직원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 제외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만 65세 이상자	없음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인 자	
보험료	산정	소득(보수)월액 또는 월평균 보수 X 보험료율			
	부과	자격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부과.징수 단, 매월 1일에 자격취득시 취득월부터 부과.징수		근무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부과. 징수 단, 월의 중간에 입사(고용)시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징수	

- ▶ 원칙적으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다.
-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가입대상이다.

지출증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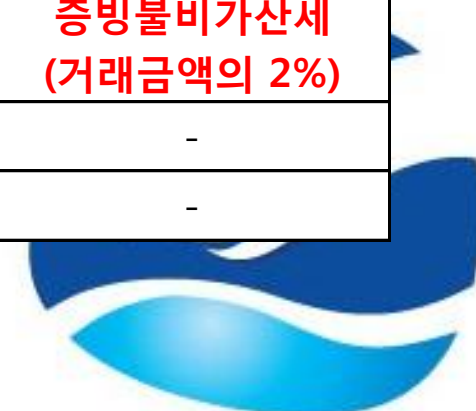


- 법적지출증빙
- 보관해야할 증빙서류신고

■ 법적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구분			대상	법정증빙서류 이외의 증빙 수취시 불이익	
				손금여부	가산세
증명서류 미수취(가공비용으로 봄)			제한없음	손금 불인정 (배당,상여 등)	-
증명서류 수취	접대비		건당 1만원 (경조금 20만원) 초과 거래	손금불인정	-
	접대비 이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건당 3만원 초과 거래	손금인정	증빙불비가산세 (거래금액의 2%)
			건당 3만원 이하거래	손금인정	-
		위 이외	제한없음	손금인정	-



사업자가 지출할 때 보관해야 하는 증빙서류

지출내용		지출증빙
인건비	임직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자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복리후생비	식대	정규증빙서류, 기타영수증
	경조사비	내부 지출결의서
접대비		정규증빙서류(1만원 초과)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만 인정
여비교통비	시내	내부 지출결의서
	시외	정규증빙서류, 기타영수증
	해외	여행사세금계산서
임차료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송금명세서
리스료	금융리스	영수증
	운용리스	계산서
지급수수료	인적용역	세금계산서(전문직 중 과세사업자),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 및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차량유지비		정규증빙서류, 기타영수증
식품,원재료 구입비	과세재화	세금계산서
	면세재화	계산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 사업소개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금액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½지원

예시보기

사업 History

2012년 2월
시범사업 시행 (전국 16개 지역)

월 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

2012년 7월 1일
전국 확대 시행

월 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

2013년 1월 1일
지원 대상 확대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

2013년 4월 1일
지원 대상 확대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 지원**

2014년 1월
지원 대상 확대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 지원**

2015년 1월
지원 대상 확대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 지원**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근로자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 ※ 단, 공공기관은 제외

■ 근로자 기준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2015년 기준)

-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예시: 월 보수 100만원 기준 연간 지원액]



근로자

연간 309,000원을
지원받아요

78,000원

국가지원금
▼ 39,000원

고용보험

540,000원

국가지원금
▼ 270,000원

국민연금



사업주

연간 324,000원을
지원받아요

108,000원

국가지원금
▼ 54,000원

고용보험

540,000원

국가지원금
▼ 270,000원

국민연금

두루누리신청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 29호의 2 서식] <'12.8.29.신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1호서식] <'12.8.29.신설>

창업세무정보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합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료 지원 신청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_____명, 고용보험 _____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국민연금 _____명, 고용보험 _____명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두루누리

<http://insurancesupport.or.kr/>

전자신고

www.4insure.or.kr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저황용종) 80g/㎡]

연금계좌세액공제 (연 400만 X 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연 300만)

가입방법

- 인터넷_ 공인인증로그인 후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www.8899.or.kr/>
 - 콜센터_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_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부/지역본부 안내**
- 은행지점 방문_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지점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제상담사_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서
- 신분증사본
-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사용금액' 한도에서만 손비인정(법인세법 27조의2②, 소득세법 33조의2①)

① 업무용 승용차?	업무에 사용되는 개별소비세법 제 1조 2항 3호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제외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②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비, 통행료 등
③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②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④ 예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①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 1,250만원(2,500만원 × 50%) 비용 인정 ②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100%로 입증한 경우 : 2,500만원 비용인정 ③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만 비용 인정
⑤ 적용대상 및 시행 방법	① 법인,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u>2016년부터 매각, 손비(필요경비)에 대하여 바로 적용·시행</u> ② 기타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u>2017년부터 시행</u> ※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업종별 성실신고 및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수익금액(매출액)]

업종	성실신고(당해년도 수익금액)	복식부기(직전년도 수익금액) *2017년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2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7,500만원 이상

<tip>

-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2016년)가 지나봐야 알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와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세무조정 대상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지를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16년에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을 넘는다면 2016년에 업무용 승용차(차량) 관련비용 개정사항이 반영됩니다.

- 2017년도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인지는 직전년도(2016년)를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실신고과 동일하게 2016년 매출액을 꼼꼼하게 계산해 보는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2016년에 복식부기 기준 매출액을 넘는다면 2017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차량) 관련비용 개정사항이 반영됩니다.



감가상각비 연간 공제한도 도입(법인세법 27조의2③, 소득세법 33조의2②) :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사업년도 중 취득시는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차량처분손실 연간 공제한도 도입(법인세법 27조의2④, 소득세법 33조의2③)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여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tip>

- 감가상각 한도 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져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이 다르겠지만 비용인정의 총액은 동일합니다.

- 2016년 이후 구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보유하고 감가상각을 하던 차량도 업무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됨을 유의하세요.

- 2015년 이전에 보유하는 차량의 경우로 감가상각을 일부한 경우에는 잔여 상각은 결산상 그대로 하되 세무상 한도액 계산하여 8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법인세법 §27의2, 소득세법 §33의2)

창업세무정보

정 부 안	수 정 안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 -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의 50% 인정 - 사업자 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 부착시 100% 인정 < 신 설 > < 신 설 >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 과세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좌 동)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 (삭 제) ※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미적용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한도 설정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적용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의무화(16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좌 동)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명	인비88-01	차량번호	17-1234
구입일시	2007년 1월 30일	총 운행거리(km)	60 km

유류 소비사항	전일잔량	14	ℓ	전일 주행계기
	주 유 량	0	ℓ	15600 km
	소 비 량	10	ℓ	금일 주행계기
	금일잔량	4	ℓ	15660 km

운 행 자	운행구간			운행시간	운행거리
	출 발 지	경 유 지	도 착 지		
홍길동	신광	동래	양산	1시간35분	60 km
					km
					km
					km
					km
					km
					km
					km
					km

점검 일자		점검 내용
2000년 00월 00일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필요함
점검 자		연진오일교판
	이 순 선 (인)	





보 도 자 료

8.6(목) 13:30부터 보도 가능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창업세무정보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책임자	안창국 과장	담당자	이진영 사무관 (02-2156-9892)	
배포일	'15. 8. 4(화)	배포부서	대변인실 (2156-9543~48)	총 1매

제 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 ☐ 금융위·기재부는 지난 9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의 기본방향을 발표('14.9.2.)한 이후,

- 실무협의를 거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별첨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별첨2] 관련 Q&A

- ☐ 동 내용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 하반기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판매될 예정임

- 하위법령 정비 등이 완료되는 즉시,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재형저축·소장펀드 vs ISA 비교>

	재형저축	소장펀드	ISA
가입자격	·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거주자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거주자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 분기 300만원 (연 1,200만원)	· 연 600만원	· 연 2,000만원
편입상품	· 예금, 펀드, 보험	· 펀드	· 예금, 펀드, 파생 결합증권
손익통산	· 해당없음(상품별)	· 해당없음(상품별)	· 계좌내 손익통산
상품간 교체	· 불가	· 불가	· 가능
세제혜택	· 비과세	· 납입액 40% 소득공제	· 인출시 순소득 기준 - 200만원 限 : 비과세 - 200만원 초과 : 분리과세 9% (지방소득세 포함시 9.9%)
기타	· 만기 7년 이상, 추가 3년 연장 가능 (2015년 일몰)	· 만기 5년 이상, 추가 5년 연장 가능 (2015년 일몰)	· 만기 5년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세무법인 광원/ 부산경영아카데미

장병호

HP) 010-7410-8588

E-mail) qudgh1980@nate.com

